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호 평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의원은

지난 5월 결산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참여한바 있습니다. 교육청을 포함한 50조원 규모의 예산에 대하여 10명의 위원이 35일 기간 안에 결산검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

효율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□ 그 와중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대하여

자료제출까지 평균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

비효율적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

- 이러한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
결산검사 기간만이라도
결산 자료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
결산위원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
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
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- 발의 전 받아본 법률자문 내용은
관련 법규상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가
어렵다는 의견도 있긴 하였으나,
본 개정안 내용이
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
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.
- 더불어 국회의 경우
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해
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도
아이디를 부여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
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